한국농촌경제연구원 · 대구경북연구원
연 구 협 력 협 약 서

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은 연구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호혜원칙에 의거,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하며, 이에 필요한 운영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협정서 2통을 작성,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.

제1조 **(목적)** 양 기관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, 공동관심 분야의 협동연구 및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등 양 기관의 공동 이익을 실현하도록 노력한다.

제2조 **(협력분야)**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한다.

가. 공동 관심분야 연구의 공동 신청 등 협동 연구 추진
나. 연구보고서, 출판물 및 기타 소장 자료의 교환
다. 지역농업 연구관련 정보의 공유
라. 학술세미나의 공동개최
마. 연구 인력의 교류
바. 기타 양 기관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

제3조 **(운영원칙)**

가. 원활한 협력관계 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은 각 기관의 대표자가 위임한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.

나. 양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한 활동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.

다. 위 합의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, 공동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 **(효력발생 및 수정)**

가. 이 협정서는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.

나. 이 협정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, 어느 일방으로

부터 협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협의 중단 통보가 없는 한 3년간 자동 연장된다.

다. 이 협약의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수정과 보완을 결정한다.

2010년 4월 15일

오 세 익

원장 오 세 익

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119-1

KREI
한국농촌경제연구원

홍 철

원장 홍 철

대구시 수성구 중동로 246

DGI 대구경북연구원